

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93년 8월 27일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93년 8월 27일
- 라. 상정일자 : 93년 9월 9일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시민회관장 한기창)

가. 제안이유

- 유교공인의 경우 제정기반이 약한 영세예술단체 및 시민이 사용하고자 할 시 총수입액의 30%(제세공과금 제외, 예매액 포함)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.

나. 주요골자

-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 총액의 100분의 30을(제세공과금 제외)사용료로 납부하게 되어 있으며 영세 예술공연단체의 공연 및 창작활동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초래되어 시민들에게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용료 납부감액으로 인한 시민문화 발전에 기여코자 함.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• 현재 시민회관 기본사용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?	• 대공연장의 경우 1일사용료 234,000원(평일) • " 306,000원(휴일) • 소공연장의 경우 1일사용료 120,000원(평일) • " 140,000원(휴일)
• 본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의 감소는 얼마나 되는지?	• 연간 1천만원정도 수입이 감소됨
• 사전 예술단체와 협의가 있었는지?	• 사전 예술단체와 의견수렴이 있었음.
• 본조례안이 통과되면 관외의 예술단체가 시민회관에서 공연할 경우에도 사용료 면제적용이 되는지?	• 적용은 되나 그러나 사례가 극히 적음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194
의 결 년 월 일	93. 9. 10 (제22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9. 9

제 출 자 : 총무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 제6조(사용료) ④항의 내용을 제정기반이 약한 영세예술단체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확대시키 활성화 시키고 나아가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을 집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키 나감으로써, 정서적인 문화예술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바람직하나 사용료 감면의 적용대상을 부천시 관내 기관 및 단체로 국한하며 부천시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관외 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종전대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지방화시대를 맞이 하여 바람직할 것임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음.

2. 주요골자

가. 조례안 제6조(사용료) ④항,

사용자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액(에매엑포함)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/10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를

관외사용자가 관람객 _____

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/100을

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로 수정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6조(사용료) ①-③ (생략) ④ 사용자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액(예매액 포함)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.	제6조(사용료) ①-③ (현행과 같음) ④ (삭제)	제6조(사용료) ①-③ (생략) ④ <u>관외</u> 사용자가 관람객 _____ _____ _____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.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천시시민회관사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(사용료) 관외사용자가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총수입액(에메엑포함)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195
의 결 년 월 일	93. 9. 10 (제22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9. 9

제 출 자 : 사회산업위원회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93. 8. 30
- 나. 제 안 자 : 부 천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93. 9. 9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위생과장 이광양
- 나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('92. 12. 21)과 식품위생사무 질의회신('93. 8. 2) 결과 식품접객업 관련업무가 도지사 권한 사무에서 고유권한 사무로 변경되어
- 현재 구 내부위임으로 업무처리중인 식품접객업 관련업무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.

다. 주요골자

-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사항을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으로 권한위임 시키는 사항임.